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침해행위 등을 신고한 사람에 대한 보호기능 강화를 위하여 심사보호국 1개 과를 평가대상 조직으로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6명(4급 1명, 5급 2명, 6급 3명) 중 정원 1명(4급 1명)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정원 1명(4급 또는 5급 1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하여 배정하고 정원 5명(5급 2명, 6급 3명)은 증원하며, 행정기관의 정상적인 민원 업무를 현저히 저해하는 민원의 조사·처리 및 점검 등을 위하여 고충처리국 1개 과를 평가대상 조직으로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6명(4급 1명, 5급 2명, 6급 3명) 중 정원 1명(4급 1명)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정원 1명(4급 또는 5급 1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하여 배정하고 정원 5명(5급 2명, 6급 3명)은 증원하며,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 행위에 대한 예방·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6급 2명)을 증원하고, 디지털 홍보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을 증원하며, 온라인 국민참여포털 등을 통하여 제출된 국민제안 등의 관리 체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한시적으로 증원한 2명(5급 1명, 6급 1명) 중 1명(6급 1명)은 감축하고, 1명(5급 1명)은 존속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1년 연장하며, 국민권익위원회 소속기관인 청렴연수원의 명칭을 국가청렴권익교육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5. 12. 00. 공포·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위하여 국민권익위원회 하부조직의 분장사무를 일부 조정하고, 특정 부처에 집중된 기능과 권한을 분산·재배치하여 권한 집중에 관한 우려를 해소하고 업무 고유의 전문성을 강화하며, 행정 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 조직체계를 재설계하는 등의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됨에 따라, 행정기관의 변경된 명칭 등을 반영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2025년도 기정예산에서 대체함

다. 합 의 : 기획재정부 및 행정안전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신·구정원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에 제2호의2 및 제4호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제6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9항제8호 중 “방지에 관한”을 “방지 관련”으로 한다.

2의2. 부패방지와 관련된 국내외 지수의 분석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

4의2. 공공기관 청렴컨설팅 지원에 관한 사항

제6조의2제2항 중 “신고자보호과”를 “부패신고자보호과, 공익신고자보호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8항 및 제9항을 각각 제9항 및 제10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부패신고자보호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부패행위,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행위 및 공공재정 부정청구 등 신고자(이하 “부패행위등신고자”라 한다) 보호 관련 진정·상담 등 민원 처리 총괄
2. 부패행위등신고자 비밀보장 위반, 신분보호, 신분보장등조치, 불이익조치 절차의 일시정지 등 부패행위등신고자 보호와 관련된 신청의

접수 및 조사

3. 조사결과에 따른 원상회복 등 조치요구
4. 부패행위등신고자 등에 대한 신변보호 조치 요청 및 해제
5. 부패행위등신고자 신분비밀보장 위반 및 보호의무 위반자에 대한 징계요구
6. 부패행위등신고자 신분비밀보장 위반자, 불이익조치 위반자 및 원상회복 등 조치요구 불이행에 대한 고발 등에 관한 사항
7. 불이익조치 위반자 및 원상회복 등 조치요구 불이행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에 관한 사항
8. 책임감면 및 소송 진행 등 관련 법원 및 기관·기업·단체 등과의 협조
9. 부패행위등신고자 보호 관련 쟁송 처리 지원
10. 사전예방적 부패행위등신고자 보호업무
11. 부패행위등신고자 보호 관련 화해 권고 및 화해안 작성 등에 관한 사항
12. 부패행위등신고자에 대한 징계, 불리한 행정처분 등의 감경 및 면제 요구
13. 부패행위등신고자에 대한 불이익조치 절차의 일시정지 요구 조치
14. 부패행위등신고자 신분보장등조치 불응 등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15. 그 밖에 부패행위등신고자 보호신청의 조사·처리 업무에 관한 사항

항

⑧ 공익신고자보호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공익침해행위, 부정청탁·금품 등 수수, 공공기관의 채용비리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행위 등 신고자(이하 “공익침해 행위등신고자”라 한다) 보호 관련 진정·상담 등 민원 처리 총괄
2. 공익침해행위등신고자 비밀보장 위반, 신변보호, 보호조치, 불이익 조치 금지 등 공익침해행위등신고자 보호와 관련된 신청의 접수 및 조사
3. 조사결과에 따른 원상회복 등 조치요구
4. 공익침해행위등신고자 등에 대한 신변보호 조치 요청 및 해제
5. 공익침해행위등신고자 신분비밀보장 위반 및 보호의무 위반자에 대한 징계요구
6. 공익침해행위등신고자 신분비밀보장 위반자, 불이익조치 위반자 및 원상회복 등 조치요구 불이행에 대한 고발 등에 관한 사항
7. 불이익조치 위반자 및 원상회복 등 조치요구 불이행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에 관한 사항
8. 책임감면 및 소송 진행 등 관련 법원 및 기관·기업·단체 등과의 협조
9. 공익침해행위등신고자 보호 관련 쟁송 처리 지원
10. 사전예방적 공익침해행위등신고자 보호업무
11. 공익침해행위등신고자 보호 관련 화해 권고 및 화해안 작성 등에

관한 사항

12. 공익침해행위등신고자에 대한 징계, 불리한 행정처분 등의 감경 및 면제 요구

13. 공익침해행위등신고자에 대한 불이익조치 금지 권고 조치

14. 공익침해행위등신고자 보호조치 불응 등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15. 그 밖에 공익침해행위등신고자 보호신청의 조사·처리 업무에 관한 사항

제7조제4항 중 “도시수자원민원과 및 교통도로민원과”를 “도시수자원민원과·교통도로민원과 및 민원갈등소통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⑮ 민원갈등소통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특이민원에 대한 조사·처리 및 이행실태의 확인·점검
2. 제1호와 관련한 일반민원 안내·상담 지원
3. 특이민원 대응을 위한 교육·상담 등 지원

제8조제7항제1호 중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로, “중소벤처기업부”를 “중소벤처기업부·기획예산처”로 한다.

제3장의 제목 “청렴연수원”을 “국가청렴권익교육원”으로 한다.

제9조의3의 제목 “(청렴연수원)”을 “(국가청렴권익교육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청렴연수원”을 “국가청렴권익교육원”으로, ““연수원””을 ““교육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제9호, 제13호, 제16호 및 제17호 중 “연수원”을 각각 “교육원”으로 한다.

제10조제3항 중 “1명(5급 1명)”을 “1명(5급 1명), 디지털 홍보를 담당하는 1명(5급 1명)”으로 한다.

제11조제2항 본문 및 같은 조 제3항 중 “연수원”을 각각 “교육원”으로 한다.

제5장(제14조)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장 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

제14조(평가대상 조직)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7조 제2항에 따른 평가대상 조직의 구체적인 사항은 별표 5와 같다.

제15조 중 “2025년 12월 31일”을 “2026년 12월 31일”로 한다.

별표 1 중 총계 “482”를 “495”로, 일반직 계 “474”를 “487”로, 서기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 “11”을 “13”으로, 서기관·과학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보건사무관·환경사무관·시설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43”을 “41”로, 검찰사무관·행정사무관·사회복지사무관·통계사무관·부감사관·공업사무관·농업사무관·해양수산사무관·보건사무관·식품위생사무관·시설사무관·임업사무관·전산사무관·방송통신사무관·환경사무관 또는 기록연구관 “150”을 “155”로, 행정주사·감사주사·검찰주사·공업주사·관세주사·농업주사·마약수사주사·방송통신주사·보건주사·보호주사·사회복지주사·세무주사·시설주사·식품위생주사·임업주사·전산주사·출입국관리주사·통계주사·해양수산주사 또는

환경주사 “138”을 “146”으로 한다.

별표 1의2 중 총계 “485”를 “498”로, 일반직 계 “477”을 “490”으로, 서기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 “11”을 “13”으로, 서기관·과학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보건사무관·환경사무관·시설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43”을 “41”로, 검찰사무관·행정사무관·사회복지사무관·통계사무관·부감사관·공업사무관·농업사무관·해양수산사무관·보건사무관·식품위생사무관·시설사무관·임업사무관·전산사무관·방송통신사무관·환경사무관 또는 기록연구관 “150”을 “155”로, 행정주사·감사주사·검찰주사·공업주사·관세주사·농업주사·마약수사주사·방송통신주사·보건주사·보호주사·사회복지주사·세무주사·시설주사·식품위생주사·임업주사·전산주사·출입국관리주사·통계주사·해양수산주사 또는 환경주사 “138”을 “146”으로 한다.

별표 1의3 및 별표 1의4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3의 제목 중 “청렴연수원”을 “국가청렴권익교육원”으로 한다.

별표 3의2의 제목 중 “청렴연수원”을 “국가청렴권익교육원”으로 한다.

별표 5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6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 및 별표 6의 개정규정

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8조제7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5]

국민권익위원회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제14조 관련)

조직	정원	평가기간
1) 심사보호국 공익신고자보호과	6명 (4급 1명, 5급 2명, 6급 3명)	2028년 9월 30일까지
2) 고충처리국 민원갈등소통과	6명 (4급 1명, 5급 2명, 6급 3명)	2028년 9월 30일까지

■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6]

국민권익위원회 공무원 한시정원표(제15조 관련)

제15조 관련 한시정원(존속기한: 2026년 12월 31일)

총계	1
일반직 계	1
행정사무관 · 검찰사무관 · 사회복지사무관 · 통계사무관 · 부 감사관 · 공업사무관 · 농업사무관 · 해양수산사무관 · 보건 사무관 · 식품위생사무관 · 시설사무관 · 임업사무관 · 전산 사무관 · 방송통신사무관 또는 환경사무관	1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6조(부패방지국) ①·② (생략)	제6조(부패방지국)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청렴정책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③ ----- -----.
1.·2. (생략)	1.·2. (현행과 같음)
<u><신 설></u>	<u>2의2. 부패방지와 관련된 국내외</u> <u>지수의 분석 및 관리 등에</u> <u>관한 사항</u>
3.·4. (생략)	3.·4. (현행과 같음)
<u><신 설></u>	<u>4의2. 공공기관 청렴컨설팅 지</u> <u>원에 관한 사항</u>
5. ~ 10. (생략)	5. ~ 10. (현행과 같음)
④ 청렴조사평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④ ----- -----.
1. ~ 5. (생략)	1. ~ 5. (현행과 같음)
<u>6. 부패방지와 관련된 국내외</u> <u>지수의 분석 및 관리 등에 관</u> <u>한 사항</u>	<u><삭 제></u>
7.·8. (생략)	7.·8. (현행과 같음)
⑤ ~ ⑧ (생략)	⑤ ~ ⑧ (현행과 같음)
⑨ 이해충돌방지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⑨ ----- -----.
1. ~ 7. (생략)	1. ~ 7. (현행과 같음)
8. 공직자의 이해충돌 <u>방지에</u>	8. ----- <u>방지 관</u>

관한 업무수행을 위한 실태조사 및 자료의 수집·관리·분석

9. (생략)

제6조의2(심사보호국) ① (생략)

② 심사보호국에 심사기획과, 부패심사과, 공공재정환수관리과, 보호보상정책과, 신고자보호과, 신고자보상과 및 공익심사팀을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공익심사팀장은 과학기술서기관·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③ ~ ⑥ (생략)

⑦ 신고자보호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신고자 보호 관련 진정·상담 등 민원 처리 총괄
2. 신고자 비밀보장 위반, 신변보호, 보호조치, 불이익조치 금지 등 신고자 보호와 관련된 신청의 접수 및 조사
3. 조사결과에 따른 원상회복 등 조치요구

련 -----

--

9. (현행과 같음)

제6조의2(심사보호국) ① (현행과 같음)

② -----

----- 부패신고자보호과, 공익신고자보호과-----

-----.

③ ~ ⑥ (현행과 같음)

⑦ 부패신고자보호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부패행위,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행위 및 공공재정 부정청구 등 신고자(이하 “부패행위등신고자”라 한다) 보호 관련 진정·상담 등 민원 처리 총괄
2. 부패행위등신고자 비밀보장 위반, 신변보호, 신분보장등조

<u>4. 신고자 등에 대한 신변보호 조치 요청 및 해제</u> <u>5. 신고자 신분비밀보장 위반 및 보호의무 위반자에 대한 징계요구</u> <u>6. 신고자 신분비밀보장 위반자, 불이익조치 위반자 및 원상회복 등 조치요구 불이행에 대한 고발 등에 관한 사항</u> <u>7. 불이익조치 위반자 및 원상회복 등 조치요구 불이행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에 관한 사항</u> <u>8. 책임감면 및 소송 진행 등 관련 법원 및 기관·기업·단체 등과의 협조</u> <u>9. 신고자 보호 관련 쟁송 처리 지원</u> <u>10. 사전예방적 신고자 보호업무</u> <u>11. 신고자 보호 관련 화해 권고 및 화해안 작성 등에 관한 사항</u> <u>12. 신고자에 대한 징계, 불리한 행정처분 등의 감경 및 면제 요구</u>	<u>치, 불이익조치 절차의 일시정지 등 부패행위등신고자 보호와 관련된 신청의 접수 및 조사</u> <u>3. 조사결과에 따른 원상회복 등 조치요구</u> <u>4. 부패행위등신고자 등에 대한 신변보호 조치 요청 및 해제</u> <u>5. 부패행위등신고자 신분비밀보장 위반 및 보호의무 위반자에 대한 징계요구</u> <u>6. 부패행위등신고자 신분비밀보장 위반자, 불이익조치 위반자 및 원상회복 등 조치요구 불이행에 대한 고발 등에 관한 사항</u> <u>7. 불이익조치 위반자 및 원상회복 등 조치요구 불이행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에 관한 사항</u> <u>8. 책임감면 및 소송 진행 등 관련 법원 및 기관·기업·단체 등과의 협조</u> <u>9. 부패행위등신고자 보호 관련 쟁송 처리 지원</u> <u>10. 사전예방적 부패행위등신고</u>
--	---

13.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

금지 권고 조치

14. 신고자 보호조치 불응 등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15. 15의2. 삭제

16. 그 밖에 신고자 보호신청의

조사·처리 업무에 관한 사항

<신 설>

자 보호업무

11. 부패행위등신고자 보호 관

련 화해 권고 및 화해안 작성

등에 관한 사항

12. 부패행위등신고자에 대한

징계, 불리한 행정처분 등의

감경 및 면제 요구

13. 부패행위등신고자에 대한

불이익조치 절차의 일시정지

요구 조치

14. 부패행위등신고자 신분보장

등조치 불응 등에 대한 이행

강제금 부과

15. 그 밖에 부패행위등신고자

보호신청의 조사·처리 업무

에 관한 사항

⑧ 공익신고자보호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공익침해행위, 부정청탁·금

품 등 수수, 공공기관의 채용

비리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행위 등 신고자

(이하 “공익침해행위등신고

자”라 한다) 보호 관련 진정·

상담 등 민원 처리 총괄

2. 공익침해행위등신고자 비밀

보장 위반, 신변보호, 보호조치, 불이익조치 금지 등 공익침해행위등신고자 보호와 관련된 신청의 접수 및 조사

3. 조사결과에 따른 원상회복 등 조치요구

4. 공익침해행위등신고자 등에 대한 신변보호 조치 요청 및 해제

5. 공익침해행위등신고자 신분 비밀보장 위반 및 보호의무 위반자에 대한 징계요구

6. 공익침해행위등신고자 신분 비밀보장 위반자, 불이익조치 위반자 및 원상회복 등 조치요구 불이행에 대한 고발 등에 관한 사항

7. 불이익조치 위반자 및 원상회복 등 조치요구 불이행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에 관한 사항

8. 책임감면 및 소송 진행 등 관련 법원 및 기관·기업·단체 등과의 협조

9. 공익침해행위등신고자 보호 관련 쟁송 처리 지원

	<u>10. 사전예방적 공익침해행위등 신고자 보호업무</u> <u>11. 공익침해행위등신고자 보호 관련 화해 권고 및 화해안 작성 등에 관한 사항</u> <u>12. 공익침해행위등신고자에 대한 징계, 불리한 행정처분 등의 감경 및 면제 요구</u> <u>13. 공익침해행위등신고자에 대한 불이익조치 금지 권고 조치</u> <u>14. 공익침해행위등신고자 보호 조치 불응 등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u> <u>15. 그 밖에 공익침해행위등신고자 보호신청의 조사·처리 업무에 관한 사항</u>
⑧ · ⑨ (생략)	⑨ · ⑩ (현행 제8항 및 제9항과 같음)
제7조(고충처리국) ① ~ ③ (생략) ④ 고충처리국에 민원조사기획과 · 행정문화교육민원과 · 국방보훈민원과 · 경찰민원과 · 재정세무민원과 · 복지노동민원과 · 산업농림환경민원과 · 주택건축	제7조(고충처리국)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 ----- ----- -----

민원과 · 도시수자원민원과 및
교통도로민원과를 두되, 각 과
장은 부이사관 · 과학기술서기
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⑤ ~ ⑭ (생 략)

⑮ 삭 제

<신 설>

제8조(행정심판국) ① ~ ⑥ (생
략)

⑦ 재정경제심판과장은 다음 사
항을 분장한다.

1. 기획재정부 · 산업통상부 · 중
소벤처기업부 · 국가데이터처
· 지식재산처 · 국세청 · 관세
청 · 조달청 · 공정거래위원회
및 금융위원회 소관 행정심판
청구사건 및 청구사건과 관련
된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대
한 각종 신청의 검토와 중앙

-----도시수자원민원과 ·
교통도로민원과 및 민원갈등소
통과-----

⑤ ~ ⑭ (현행과 같음)

⑮ 민원갈등소통과장은 다음 사
항을 분장한다.

1. 특이민원에 대한 조사 · 처리
및 이행실태의 확인 · 점검
2. 제1호와 관련한 일반민원 안
내 · 상담 지원
3. 특이민원 대응을 위한 교육
· 상담 등 지원

제8조(행정심판국) ① ~ ⑥ (현행
과 같음)

⑦ -----
-----.

1. 재정경제부-----중
소벤처기업부 · 기획예산처--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서 및 결정서의 작성

2. (생략)

⑧ ~ ⑪ (생략)

제3장 청렴연수원

제9조의3(청렴연수원) ① 청렴연수원(이하 “연수원”이라 한다)의 원장은 부이사관·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연수원에 교육지원과 및 교육운영과를 두며, 교육지원과장 및 교육운영과장은 공업사무관 · 보건사무관 · 환경사무관 · 시설사무관 · 전산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다만, 교육지원과장 및 교육운영과장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7조제2항에 따라 상호이체하여 배정 · 운영하는 과학기술서기관 · 서기관 · 보건사무관 · 환경사무관 · 시설사무관 · 전산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할 수 있다.

③ 교육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2. (현행과 같음)

⑧ ~ ⑪ (현행과 같음)

제3장 국가청렴권익교육원

제9조의3(국가청렴권익교육원) ①
국가청렴권익교육원-----“교
육원”-----

— — ●

② 교육원

③ _____

_____.

1. ~ 8. (생략)	1. ~ 8. (현행과 같음)
9. <u>연수원</u> 소속 공무원 임용· 전보·복무 및 그 밖에 인사 사무에 관한 사항	9. <u>교육원</u> ----- ----- -----
10. ~ 12. (생략)	10. ~ 12. (현행과 같음)
13. <u>연수원</u> 시설 유지·관리 및 방호	13. <u>교육원</u> ----- --
14. · 15. (생략)	14. · 15. (현행과 같음)
16. <u>연수원</u> 정보보안 및 홈페이지, 전산시스템 관리 등 정보 화 업무에 관한 사항	16. <u>교육원</u> ----- ----- -----
17. 그 밖에 <u>연수원</u> 내 다른 과 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17. ----- <u>교육원</u> ----- -----
④ (생략)	④ (현행과 같음)
제10조(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② (생략)	제10조(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② (현행과 같음)
③ 국민권익위원회에 두는 공무 원 정원 중 공공데이터 관련 업 무를 담당하는 <u>1명(5급 1명)</u> , 정 보보호·보안을 담당하는 1명(7 급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 용한다.	③ ----- ----- ----- <u>1명(5급 1명)</u> , 디 지털 홍보를 담당하는 1명(5급 <u>1명</u>)----- -----.
제11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생략)	제11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현행과 같음)
② <u>연수원</u> 에 두는 공무원의 정 원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국	② <u>교육원</u> ----- -----.

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5조의2제1항 단서에 따라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3의 2와 같으며, 별표 3의2의 정원 중 1명(행정사무관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③ 합동민원센터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3명(5급 3명), 연수원에 두는 공무원 정원 중 1명(6급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신 설>

<신 설>

제15조(한시정원) 온라인 국민참여포털 등을 통하여 제출된 국민제안 등의 관리 체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5년 12월 31일까지 별표 6에 따

-----.

③ -----
----- 교육원 -----

-----.

제5장 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
제14조(평가대상 조직)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7조제2항에 따른 평가대상 조직의 구체적인 사항은 별표 5와 같다.

제15조(한시정원) -----

----- 2026년 12월 31일 -----

른 한시정원을 국민권익위원회 에 둔다.	----- -----.
----------------------------------	-------------------------

신·구정원대비표

■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1]

국민권익위원회 공무원 정원표(제10조제1항 본문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		•		
			482		495	+13	
일	반	직	•		•		
계			•		•		
			474		487	+13	
서	기	관	•		•		
또	는		•		•		
서	기	관	11		13	+2	
서	기	관					
•	과	학					
서	기	관					
•	행	정					
사	무	관	43		41	-2	
•	보	건					
사	무	관					
•	환	경					
사	무	관					
•	시	설					
사	무	관					
또	는						
전	산	사					
무	관						
•			•		•		

검찰사무관 · 행정사무관 · 사회복지사무관 · 통계사무관 · 부감사관 · 공업사무관 · 농업사무관 · 해양수산사무관 · 보건사무관 · 식품위생사무관 · 시설사무관 · 임업사무관 · 전산사무관 · 방송통신사무관 · 환경사무관 또는 기록연구관 · ·	<u>150</u> · ·	<u>155</u> · ·	+5
행정주사 · 감사주사 · 검찰주사 · 공업주사 · 관세주사 · 농업주사 · 마약수사주사 · 방송통신주사 · 보건주사 · 보호주사 · 사회복지주사 · 세무주사 · 시설주사 · 식품위생주사 · 임업주사 · 전산주사 · 출입국관리주사 · 통계주사 · 해양수산주사 또는 환경주사 · ·	<u>138</u> · ·	<u>146</u> · ·	+8

■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1의2]

국민권익위원회 공무원 정원표(제10조제1항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 <u>485</u>	• <u>498</u>	+13
일반직 계	• • <u>477</u>	• • <u>490</u>	+13
서기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	• • <u>11</u>	• • <u>13</u>	+2
서기관·과학기술서기관·행정 사무관·보건사무관·환경사무 관·시설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u>43</u>	<u>41</u>	-2
•	•	•	

검찰사무관 · 행정사무관 · 사회복지사무관 · 통계사무관 · 부감사관 · 공업사무관 · 농업사무관 · 해양수산사무관 · 보건사무관 · 식품위생사무관 · 시설사무관 · 임업사무관 · 전산사무관 · 방송통신사무관 · 환경사무관 또는 기록연구관 · ·	<u>150</u> · ·	<u>155</u> · ·	+5
행정주사 · 감사주사 · 검찰주사 · 공업주사 · 관세주사 · 농업주사 · 마약수사주사 · 방송통신주사 · 보건주사 · 보호주사 · 사회복지주사 · 세무주사 · 시설주사 · 식품위생주사 · 임업주사 · 전산주사 · 출입국관리주사 · 통계주사 · 해양수산주사 또는 환경주사 · ·	<u>138</u> · ·	<u>146</u> · ·	+8